

배포 일시	2022. 6. 27.(월)		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 김민태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 정연준 (044-201-3975)
보도일시	2022년 6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8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%까지 감면 - 28일 국무회의서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 통과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8일(화)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 - 이번 개정은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개정안 공포*(사용료 감면)에 따른 후속조치이며,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.
 - * '22. 1. 4. 공포('22. 7. 5. 시행)
- 이번에 개정된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,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.
 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·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, 유희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-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,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-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.
-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지자체 유휴부지 활용사례



(창원시) 임항선 “그린웨이 조성사업 (2020년)”



(순천시) 경전선 “에코 누비길 조성사업 (2018년)”

-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
-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7월 5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참 고**지자체 유희부지 공익사업 활용사례****춘천시****경춘선 “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”**

사 업 명	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
위 치	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96-2 일원
규 모	춘천시 (L=0.2km / A=3,831㎡)
사 업 비	약 14.1억 원
사업기간	2018~2019년
사업내용	청년창업공방, 창작공간, 소공연장 등 조성
추진경위	활용사업 채택(18.7.18) / 사용허가(19.01.01~23.12.31)



창원시 임항선 “그린웨이 조성사업”

사업명	그린웨이 조성사업
위치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~ 마산회원구 석전동 일원
규모	창원시 (L=5km / A=38,342㎡)
사업비	약 105억
사업기간	2016년~2020년
사업내용	주민 친화적 도심 녹지공원, 휴식공간 및 자전거도로 조성
추진경위	활용사업 채택(16.09.20) / 기부채납 승인(21.11.25)



수원시 수인선 “자전거도로 조성사업”

사업명	자전거도로 조성사업
위치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66 일원
규모	수원시 (L=3km / A=30,592㎡)
사업비	약 14.2억 원
사업기간	2018년
사업내용	자전거도로
추진경위	활용사업 채택(16.3.31) / 기부채납 승인(20.05.20)



순천시 경전선 “에코 누비길 조성사업”

사업명	에코 누비길 조성사업
위치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237-2 ~ 복성리 26-3 일원
규모	순천시 (L=2.2km / A=42,447m ²)
사업비	약 19.5억 원
사업기간	2016년~2018년
사업내용	자전거도로, 산책로 등
추진경위	활용사업 채택(15.12.15) / 기부채납 승인(18.03.13)

